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고령친화제품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하여 고령친화제품등의 정의에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로 제한된 식품군을 노인을 위한 식품(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) 및 급식 서비스로 확대·변경하고 수산식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고자 함.

또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를 전문적·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심사위원회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“고령친화제품등”의 정의(안 제2조 개정)

-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해 고령친화제품 중 식품의 범위를 노인을 위한 식품(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)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함.
- 수산식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를 관계행정기관에 포함

나. 우수제품 등의 심사위원회(안 제10조 개정)

-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추가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또는 신설한다.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3호 중 “건강기능식품”을 “식품(「건강기능식품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2조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”이란 해양수산부를 말한다.

제10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「고령친화산업 진흥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아목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~ 2. (생략) 3. 노인을 위한 <u>건강기능식품</u> 및 급식 서비스 4. (생략) <신설>	제2조(정의) ① 「고령친화산업 진 흥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호아목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노인을 위한 <u>식품</u> (「건강기 능식품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<u>건강기능식품</u> 을 포함한다) 및 급식 서비스 4. (현행과 같음)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“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”이란 해양수산부를 말한다.
제10조(우수제품 등의 심사위원회) (생략) ② ~ ③ (생략) 1. (생략) <신설> 2. (생략)	제10조(우수제품 등의 심사위원회) ①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 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 2.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	
연락처	044-202-3460, 3461